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539번
- 제 안 자 : 서호연 의원 (찬성자 24명)
- 제 안 일 : 2025년 3월 31일
- 회 부 일 : 2025년 4월 2일

2. 제안이유

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 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입법예고(2025.4.5. ~ 4.9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‘본 개정안’)은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·비위 등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지적해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 제23조(감사위원회 규정) (생략) 제24조(준용) (생략)	제23조(포상 등)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제24조(감사위원회 규정) (생략) 제25조(준용) (생략)

- 감사위원회는 ‘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’ 및 ‘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’ 사업을 통해 각급 기관의 책임행정 구현과 비리 예방 및 감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〈 개정안 관련 포상 사업 개요 〉

	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	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
취지	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조성	자율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(부서)별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취약기관은 개선을 유도
평가대상	전 부서(감사위원회 제외)	
대상기간	1년	
포상 및 표창 (‘24년 기준)	우수기관 및 직원 시장표창 및 부상 수여	우수부서 포상금 지급

※ 출처 : 2024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, 기관(부서)별 청렴지수 평가계획 방침서 발취

- 두 사업은 과거부터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조직 내부통제를 제고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기관, 부서 등을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 내지 700만원 수준의 소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음.

※ "포상금"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, 행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함.

〈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내역(2020~2024년)〉

연도	포상금 예산 편성액 (집행액)	수상 등급 (기관 수)	기관명(포상금액)
2020	총예산:600만원 (집행액:600만원)	최우수(1)	보건환경연구원(2백만원)
		우수(3)	소방재난본부, 강남소방서, 남부수도사업소 (각 1백만원)
		장려(4)	시민건강국, 서울역사박물관, 중랑소방서, 강서수도사업소(각 25만원)
2021	총예산:600만원 (집행액:600만원)	최우수(1)	소방재난본부(2백만원)
		우수(4)	서북병원, 광진소방서, 서부수도사업소, 상수도사업본부(각 1백만원)
2022	총예산:600만원 (집행액:600만원)	최우수(1)	소방재난본부(2백만원)
		우수(4)	성북소방서, 서부도로사업소, 강동수도사업소, 상수도사업본부(각 1백만원)
2023	총예산:600만원 (집행액:600만원)	최우수(1)	소방재난본부(2백만원)
		우수(4)	강북아리수정수센터, 성동소방서, 농업기술센터, 상수도사업본부 (각 1백만원)
2024	총예산:600만원 (집행액:600만원)	최우수(1)	서울아리수본부(3백만원)
		우수(1)	성북소방서(150만원)
		장려(3)	재무국, 강동수도사업소, 소방재난본부(각 50만원)

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내역(2020~2024년)〉

연 도	포상금 예산편성액 (집행액)	수상 등급 (기관 수)	부서명(포상금액)
2020	총예산:700만원 (집행액:680만원)	최우수(2)	서울기록원, 소방감사담당관(각 150만원)
		우수(4)	도로시설과, 수도자재관리센터, 민생수사1반, 어린이병원 간호부(각 50만원)
		장려(6)	서울역사편찬원, 농업기술센터, 대기질통합분석센터, 도시관리과, 서북병원 약제부, 은평병원 간호부(각 30만원)
2021	총예산:700만원 (집행액:660만원)	최우수(2)	도시계획과, 소방행정과(각 100만원)
		우수(4)	균형발전정책과, 민방위담당관, 중부수도사업소, 어린이병원 간호부(각 70만원)
		장려(6)	물순환정책과, 건설혁신과, 평생교육과, 식품의약품부,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, 서북병원 진료부(각 30만원)
2022	총예산:700만원 (집행액:660만원)	최우수(2)	교육지원정책과,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(각 100만원)
		우수(4)	기술심사담당관, 민방위담당관, 동부수도사업소, 공무원수련원(각 70만원)
		장려(6)	동북권사업과, 홍보담당관, 경제수사대, 어린이병원 간호부, 암사아리수정수센터,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(각 30만원)
2023	총예산:700만원 (집행액:700만원)	최우수(2)	건설혁신과,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(각 120만원),
		우수(4)	38세금징수와, 자치경찰지원과, 북부도로사업소,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(각 70만원)
		장려(6)	노동정책담당관, 경제수사대, 도심재창조과, 강남농수산물검사소,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,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(각 30만원)
2024	총예산:700만원 (집행액:700만원)	최우수(1)	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(300만원)
		우수(2)	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, 서울대공원 관리부 (각 100만원)
		장려(4)	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, 재무국 세무과,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,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(각 50만원)

- 다만,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예산편성기준(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)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 포상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해당 포상금 예산 편성 시 법령이나 조례상의 명시적 근거 없이 관행적(내부 방침 또는 규칙에 근거 등)으로 추진해 왔음.

〈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발췌〉

그룹	편성목	설정 (통계목 포함)	비고
300	303 포상금	01. 포상금 1.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2.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3. 「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」에 따른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.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. <u>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</u> (단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)	

※ 포상금 사업 최초 시행 연도 및 근거

- **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** : 2009년 이전부터 시행, '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(방참)'
(감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자료 폐기 등으로 인해 최초 시작연도 확인 어렵다고 밝힘)
- **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** : 2015년부터 시행, 「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

- 이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(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「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」 등) 심의 시 “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상금은 개선이 필요하며,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.

- 본 개정안은 상기 지적사항 등 그간 지적된 감사위원회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, 기존 포상금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감사위원회는 반부패·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, 시민불편·안전분야 집중 감사, 시민인권 증진, 투자·출연기관 비리 예방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
 - 오랜 기간 공직기강과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 법령위반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
- 종합적으로, 본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, 포상금 편성 및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포상금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전 문 위 원	정 찬 일
입 법 조 사 관	임 재 빈